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2-6호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6일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

#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안 예고

## 1. 제정이유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여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가. 대전광역시 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4조 및 제5조).

나. 지식재산의 창출 촉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6조 및 제7조).

다. 지역특성화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라. 전담부서 설치 및 지식재산정책책임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9조).

마. 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바. 발명제안 장려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사.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아. 재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

##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 산업건설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02-789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산업건설전문위원실(전화 042-600-5332, FAX 042-600-5049, E-mail : lgsung64@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 4. 제정 조례안 : 붙임

#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여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식재산위원회 설치) 시장은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식재산 관련 주요 시책과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식재산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경제산업국장,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의 대표자
3. 변호사,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지식재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신성장산업과장이 된다.

⑧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지식재산 창출 촉진) 시장은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특허정보종합컨설팅 및 지역브랜드·디자인 가치제고 지원 사업
2. 지식재산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진흥계획의 홍보활동
3.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전시회 등의 개최
4. 지식재산 관련 유공자와 우수자 포상
5.「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기업의 지식재산 활성화를 위한 사업
7. 그 밖에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식재산 사업화 촉진) 시장은 대전광역시에서 지원하여 창출된 지식재산의 적극적인 활용과 기업이전을 위하여 우수 발명의 사업화 촉진 및 지식재산 거래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지역특성화사업 실시) 시장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활용사업을 할 수 있다.

제9조(전담부서 설치 및 지식재산정책책임관 지정) ①시장은 지식재산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에 지식재산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②시장은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을 지식재산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10조(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 시장은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재의 양성, 확보 및 자질향상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발명제안 장려) ①시장은 시민의 발명에 대한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시민발명제안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직무발명 제안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12조(유관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지식재산 시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소 등과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13조(재원의 지원) 시장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위하여 지식재산 관련 법인·단체나 연구기관 등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 지식재산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지식재산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공공연구기관과 사업자등은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과 적극적인 활용 및 소속 연구자와 창작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그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연구기관 및 사업자등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과 그 기반 조성을 위한 정부의 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12조(지식재산정책책임관의 지정)**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해당 기관의 지식재산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식재산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 □ 지식재산기본법 시행령

**제2조(민간의 정책참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재산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관련 연구기관, 법인·단체,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지식재산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12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식재산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국가공무원

2. 시·도: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정책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업무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1. 지식재산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
2. 지식재산 관련 사업 평가
3. 지식재산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지식재산 관련 업무